

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

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5월 26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김규남,
김기덕, 김길영, 김원태,
박승진, 박철성, 봉양순,
우형찬, 이민옥, 이원형,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국제문화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국제교류, 관광산업, 다문화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음
-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문화행사 개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다문화 · 청년 · 관광 · 국제교류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
- 이에 올해 4월 제정한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 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(안 제5조)
- 마.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 (안 제6조)

바. 민관협력에 대해 규정함 (안 제7조)

사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 (안 제8조 및 제9조)

아.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0조)

자. 국제협력 및 도시외교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1조)

차. 표창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,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국제문화행사”란 문화·예술·관광·전통문화·생활문화·체육·다문화·국제교류 분야에서 국내외 참가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서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행사를 말한다.
- ② “주관기관”이란 국제문화행사를 기획·운영하는 법인·단체·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- ③ “다문화 국제행사”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와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문화행사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의 문화 다양성과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2. 국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방안
3.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
4. 다문화·청년·지역문화 연계 사업 지원 방안
5. 국제문화행사 전문인력 양성 방안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①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및 운영 지원
- ② 국제 전통문화·생활문화 교류 사업
- ③ 국제 청년·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
- ④ 국제문화행사 홍보 및 관광 연계 사업
- ⑤ 국제회의·포럼·전시·공연 개최 지원
- ⑥ 국제문화행사 관련 교육 및 연구 사업
- ⑦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

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민관협력)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·단체·대학·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한 민간교류 및 도시외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 및 기본계획
2. 국제문화행사 지원 대상 선정
3. 국제교류 및 민관협력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2. 문화·예술·관광·국제교류·다문화 분야 전문가
3. 관계 공무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실태조사 및 연구)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조사·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국제협력 및 도시외교) ① 시장은 국제문화행사를 통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국제문화행사를 서울특별시의 도시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국제문화행사의 발전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1조(목적) 제2조(정의) 제3조(시장의 책무)	x	[재정소요 요인 없음] 조례 제정의 목적, 국제문화행사, 주관기관, 다문화 국제행사 등 관련 용어의 정의 사항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2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[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] 기본계획 수립은 통상적으로 관련 분야 학술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진하므로 비용이 발생함 ⇒ 총 86,276천원 소요예상(연평균 17,255천원 소요)
3	제5조(지원사업) 제6조(재정지원) 제7조(민관협력)	△	[기술적 추계 곤란] 재정지원의 대상, 범위, 시기 등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 곤란
4	제8조(위원회의 설치) 제9조(위원회의 구성)	○	[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] 위원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례 내용 및 유사 위원회 등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위원회 비용을 자체 추계함 ⇒ 총 57,249천원 소요예상(연평균 11,450천원 소요)
5	제10조(실태조사)	○	[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]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구용역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추계 하였음 ⇒ 총 86,278천원 소요예상(연평균 17,256천원 소요)
6	제11조(국제협력)	x	[재정소요 요인 없음] 협력체계 구축은 통상 비용 수반 요인 ¹⁾ 이 없거나 있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7	제12조(표창)	x	[재정소요 요인 없음]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등에 의거하여 시행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미미함

1) [재정소요 영향 미미] 협력체계 구축(Ex. 업무협조 MOU)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(Ex. 현수막, 입간판, 업무 협약서 제작 등)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
- 실태조사(안 제10조)

나. 전제

○ (기본계획의 수립)

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우를 가정

-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,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계 기간 중 첫 해에 한해 학술연구용역 수행이 필요
- (용역기간) 3개월,
- (인력구성) 책임연구원(1명) 연구원(1명), 연구보조원(1명)

○ (위원회의 설치)

임의규정이나 국제문화행사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

- 서울시 유사 위원회 운영 사례 등 활용
- (위원구성) 위원구성은 15인을 가정(공무원 2인 + 시의원 1인 + 민간위원 12명)
- (위원임기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을 고려하여 2년 전제
- (회의개최) 분기별 1회씩 연 4회²⁾ 실시 가정
- (소요항목) 참석수당 1인 200,000원, 업무추진경비 1인 30,000원, 위촉장 제작비 1인 5,500원 전제
- (발생기간) 2027년부터 비용 발생, 매년 소요, 추계기간(2027~2031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

○ (실태조사)

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를 가정³⁾

- 실태조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, 추계 기간 중 3년마다 연구용역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계함
- (용역기간) 3개월
- (인력구성) 책임연구원(1명) 연구원(1명), 연구보조원(1명)

○ (미 고 려) 향후 실제 사업 추진 형태(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),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7년~2031년)

2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(위원회의 운영)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

3) 유사 실태조사 참고 : 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」 제6조(실태조사 등)제2항을 참고하여 3년마다 실시 가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총 229,803천원(연평균 45,961천원 × 5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	86,276	-	-	-	-	86,276
	○ 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	11,483	11,400	11,483	11,400	11,483	57,249
	○ 실태조사(안 제10조)	43,139	-	-	43,139	-	86,278
	소계(a)	140,898	11,400	11,483	54,539	11,483	229,803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140,898	11,400	11,483	54,539	11,483	229,803

4. 덧붙이는 의견

○ 【추계액 성격】 예시적·제안적 금액

-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은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,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**선제적 입법**⁴⁾으로, 관련부서(문화본부 문화정책과) 문의 결과 해당 안은 구체적 정책 수단, 집행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 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 추계하였음

○ 【추계액 활용유의】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

-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표본수, 조사방식, 조사기간, 분석 심도 등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5. 작성자

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
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
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
추 계 분 석 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4) 【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】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**능동적 입법조치**이나,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: 총 229,803천원 소요 예상

1. 비용요소
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
- 실태조사(안 제10조)

2. 세부추계내역

- ① 기본계획의 수립 = 86,276천원⁵⁾
= (① 인건비 + ② 경비 + ③ 일반관리비 + ④ 이윤)⁶⁾ + ⑤ 부가가치세
- 인 건 비 = 51,744천원
= 인력 전체 보수월액 합⁷⁾ x 용역기간
= 8,624천원 x 6개월
- 경 비 = 15,523천원
= ①의 30%⁸⁾
- 일반관리비 = 4,036천원
= (①+②)의 6%⁹⁾
- 이 윤 = 7,130천원
= (①+②+③)의 10%¹⁰⁾
- 부가가치세 = 7,843천원
= (①+②+③+④)의 10%
- ② 위원회의 설치 = 57,249천원(연평균 11,450천원 x 5년)
- 참 석 수 당 = 9,600천원
= 수당단가 x 지급인원 x 연4회
= 200천원¹¹⁾ x 12명¹²⁾ x 4회

5)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1,000원 미만 절상

6) 「(계약예규) 예정가격 작성기준」 [별표4]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에 따른 원가계산에 따라 작성함

7) 책임연구원 보수월액(3,784천원), 연구원 보수월액(2,901천원), 연구보조원 보수월액(1,939천원) 지급 가격
(출처 : 행정안전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)

8) 실무적 관행: 세부 경비 항목을 과업지시서에 맞춰 산출했을 때, 일반적으로 인건비 합계액의 30% ~ 40% 내외로 수립

9)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

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
17. 기타 용역: 100분의 6

10)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

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.

4. 용역: 100분의 10

$$\begin{aligned}
 - \text{업무추진경비} &= 1,800\text{천원} \\
 &= \text{경비단가} \times \text{지급인원} \times \text{연4회} \\
 &= 30\text{천원}^{13)} \times 15\text{명} \times 4\text{회}
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
 - \text{위촉장 제작비} &= 83\text{천원} \\
 &= \text{제작비용} \times \text{인원} \\
 &= 5,500\text{원}^{14)} \times 15\text{명}
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
 \textcircled{3} \text{ 실태조사} &= 43,139\text{천원} \\
 &= (\textcircled{1} \text{ 인건비} + \textcircled{2} \text{ 경비} + \textcircled{3} \text{ 일반관리비} + \textcircled{4} \text{ 이윤}) + \textcircled{5} \text{ 부가가치세}
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
 - \text{인 건 비} &= 25,872\text{천원} \\
 &= \text{인력 전체 보수월액 합} \times \text{용역기간} \\
 &= 8,624\text{천원} \times 3\text{개월}
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
 - \text{경 비} &= 7,762\text{천원} \\
 &= \textcircled{1} \text{의 } 30\%
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
 - \text{일반관리비} &= 2,018\text{천원} \\
 &= (\textcircled{1} + \textcircled{2}) \text{의 } 6\%
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
 - \text{이 윤} &= 3,565\text{천원} \\
 &= (\textcircled{1} + \textcircled{2} + \textcircled{3}) \text{의 } 10\%
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
 - \text{부가가치세} &= 3,922\text{천원} \\
 &= (\textcircled{1} + \textcircled{2} + \textcircled{3} + \textcircled{4}) \text{의 } 10\%
 \end{aligned}$$

11)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 1. 위원회 참석수당

구분	단위	단가	비고
위원회	일당	기본료 : 150,000원 초 과 : 50,000원	- 원격회의 사에도 동일하게 지급 -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

12)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(수당)제2항에 따라 공무원(당연직 등),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12명에게 지급

13)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및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에 따라 **30천원 수준으로 적용**
 ⇒ 최근 50천원으로 변경(2024. 8. 27.개정)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

14)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/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(전원지급 전제)